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소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25

발의연월일: 2024. 6. 20.

발 의 자:이소영·오기형·조인철

염태영 • 민병덕 • 정진욱

위성곤 • 박지원 • 박희승

허 영·주철현·양부남

김동아 • 한창민 • 복기왕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, 지난해 12월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(COP28)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23개국들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3배늘리기로 약속함.

이미 캐나다, 스웨덴, 노르웨이 등 여러 국가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50%를 돌파한 반면, 우리나라의 2023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약 9%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. 그로 인해 글로 벌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워 납품계약이 취소되는 등 국내 기업들에 실체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.

한편, 우리나라의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의 원인 중 하나로는 과도한 입지규제가 지목받고 있음. 중앙정부 차원의 명확한 기준 없이 각 지 자체별 조례를 통해 100m에서 1,000m까지의 이격거리를 두고 있어,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가 들어설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 임.

이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시, 도시·군계획조례가 아닌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에서 규정한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이격거리 기준을 따르도록 하여,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·보급 촉진에 박차를 가하고자 함(안 제58조제3항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소영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724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 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관한 허가 기준은 같은 법 제27조의3에 따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관한 허가 기준 적용례)
제58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7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8조(개발행위허가의 기준) ①	제58조(개발행위허가의 기준) ①
·② (생 략)	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	3
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	
역의 특성, 지역의 개발상황,	
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	
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	
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u><단서</u>	
<u>신설></u>	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
	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3
	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
	너지 설비의 설치에 관한 허가
	기준은 같은 법 제27조의3에
	<u> 따른다.</u>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